

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[시립수암어린이집]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9-891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연월일 : 2025. 10. 13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맡을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공보육의 질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산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위탁사무명

-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

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, 동법 시행규칙 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- 「안산시 영유아보육조례」 제22조(위탁운영) 및 제23조(위탁계약 및 기간 등)
-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민간위탁 사무) 및 제7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○ 필요성

-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사업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 있는 운영체에 위탁운영 필요

민간위탁 기간 및 사무내용

- 민간위탁 기간 : 2026.3.1.~2031.2.28.(5년)

※ 「안산시영유아보육조례」 제23조(위탁계약 및 기간 등)에 따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함.

- 민간위탁 사무내용

- 시립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
- 그 외 영유아 복지향상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

※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민간위탁 사무)

수탁자 선정방식

- 모집방법 : 공개모집

- 심사방법 : 안산시보육정책위원회 심사

- 심사결정 :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·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자 중 최다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수탁자로 결정

- 심사기준 :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에 따라 심의

| 심 사 항 목 | 항목별 점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가. 어린이집 운영계획 | 40 |
| 나.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| 35 |
| 다. 운영체의 운영실적 | 10 |
| 라. 운영체의 공신력 | 10 |
| 마. 운영체의 재정능력 | 5 |
| 합 계 | 100 |

※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(교육부고시2024-13호)

위탁시설 개요

(단위 : 명 / m²)

| 시설명 | 소재지 | 現위탁 운영자 | 정원 (현원) | 교직원수 | 연면적 | 위탁 유형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시립수암어린이집 | 상록구 수암길 26 | 이미라 | 50 (44) | 14 | 515.02 | 재위탁 |

시설별 보육아동 규모

(단위 : 개 / 명)

| 어린이집명 | 구분 | 계 | 0세 | 0,1세 혼합반 | 1세 | 1,2세 혼합반 | 2세 | 3세 | 3,4세 혼합반 | 4세 | 4,5세 혼합반 | 5세 | 장애아 |
|-------|----|----|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----|-----|
| 시립수암 | 반 | 9 | 2 | 0 | 2 | 0 | 2 | 0 | 1 | 0 | 0 | 1 | 1 |
| | 인원 | 44 | 2 | 0 | 8 | 0 | 10 | 0 | 12 | 0 | 0 | 10 | 2 |

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1】

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: 【붙임 2】

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3】